

2023년도 보상지침(분묘보상액)

‘23. 2. 16.(목) 보상과

□ 분묘에 대한 보상액

○ 근거규정

- 「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」 제42조(분묘에 대한 보상액의 산정)
- 「장사 등에 관한 법률」 제2조 제16호
- 분묘에 대한 보상액의 산정지침

○ 보상기준

- (유연분묘) 연고자가 있는 분묘에 대한 보상액은 분묘이전비, 잡비 및 이전보조비의 합계액으로 산정
- (무연분묘) 연고자가 없는 분묘에 대한 보상액은 유연분묘 이전비, 잡비의 50% 이하의 범위 안에서 산정
- 다만, 사업시행자가 직접 산정하기 어려운 경우 감정평가업자에게 평가 의뢰

< 유연 및 무연분묘 보상금 산정기준 >

- ① 분묘이전비 : 4분판 1매, 마포 24m 및 전지 5권의 가격, 제레비, 노임 5인분 (합장은 사체 1구당 각각의 비용의 50% 가산, 아장은 단장 분묘이전비의 40%만 지급, 3합장은 각각의 비용의 90% 가산, 4합장은 각각의 비용의 120% 가산, 5합장은 각각의 비용의 140% 가산, 6합장 이상은 각각의 비용의 150% 가산) 및 운구차량비
- ② 잡비 : 분묘이전비의 30%에 해당하는 금액
- ③ 이전보조비 : 100만원
- ④ 석물이전비 : 산출이 곤란하므로 감정평가 후 보상

- (납골분묘) 감정평가업자에게 평가 의뢰하여 분묘이전비, 잡비 및 이전보조비의 합계액으로 산정

* 납골분묘는 토지에 유골함을 매장한 경우에 한하여 본 지침 단가를 적용하며, 집단 가족 납골당 형태의 경우는 납골당 시설과 유골함을 포함하여 별도 감정평가금액으로 지급

< 납골분묘 보상금 산정기준 >

- ① 분묘이전비 : 보통인부 5인, 광목 2마 및 전지 5권의 가격, 제례비 및 운구 차량비
- ② 잡 비 : 분묘이전비의 30%에 해당하는 금액
- ③ 이전보조비 : 100만원
- ④ 석물이전비 : 산출이 곤란하므로 감정평가 후 보상

○ 2023년도 분묘보상금 산정금액

(단위 : 원)

구 분		보상금액	비 고
유연분묘	단 장	3,920,000	
	합 장	5,080,000	
	아 장	2,527,000	
	3합장	6,009,000	
	4합장	6,706,000	
	5합장	7,170,000	
	6합장 이상	7,403,000	
무연분묘	단 장	1,420,000	
	합 장	2,000,000	
	아 장	724,000	
납골분묘	단 장	3,272,000	* 화장 후 유골함을 매장한 분묘
	합 장	4,110,000	

* 통계에 의한 손실보상금 산정기준 적용지침(토지정책과-4593호, 2011.09.25.)에 따라 통계에 따라 보상금을 확정하여 협의통지를 한 경우 통지일로부터 1년 안에 산정 기준(통계)이 낮게 변경된 경우에는 당초 통지금액으로 보상

** 보상금액은 천원 단위 미만 반올림